

1.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제19157호, 2023.1.3. 일부개정, 2024.1.4. 시행)에 따라 화재위험평가 결과 우수업소에 대한 소방안전교육·화재안전조사 면제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자의 자격에 ‘소방시설관리사’를 추가하며, 소방안전교육 강사 자격요건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자의 자격에 ‘소방시설관리사’ 추가 (안 제14조제2호나목)
- 나. 화재위험평가 결과 우수업소(A등급)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기간을 2년으로 정함 (안 제16조)
- 다.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휴업·폐업 시 소방청장이 통보하는 대상에 ‘특별자치시장’ 추가 (안 제19조제2항)
- 라. 소방안전교육 강사의 자격요건 관련, 관련 자격증 취득 후 일정 기간 강의경력을 갖추도록 하여 시간적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하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지방소방위’와 ‘지방소방장’ 용어를 삭제함 (안 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00. 00. ~ 00. 0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나목 중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를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로 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제17조 및 제17조의2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소방안전교육 등 면제기간) 법 제15조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이란 2년 동안을 말한다.

제19조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라) 및 (마) 중 “소지한 자로서”를 각각 “취득한 후”로 하고, 같은 (1)(아) 중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을 “이상”으로, “또는 지방소방장 이상”을 “이상”으로 한다.

이 규칙은 2024년 1월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등)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주기, 점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등)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안전점검자의 자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2.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해당 업소의 종업원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제2호마목 또는 제3호자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자,	나. ----- ----- ----- ----- -----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u>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u>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u>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u> --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16조(소방안전교육 등 면제기간) 법 제15조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u>

<u>제16조</u> · <u>제17조</u> (생 략) 제19조(휴업 또는 폐업신고 등) ① (생 략)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u>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u>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u>안</u>”이란 2년 동안을 말한다. <u>제17조</u> · <u>제17조의2</u> (현행 제16조 및 제17조와 같음) 제19조(휴업 또는 폐업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u> ----- -----.
---	---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장비기준(제8조관련)

1. 교육인력

가. 인 원 : 강사 4인 및 교무요원 2인 이상

나. 강사의 자격요건

(1) 강 사

(가) 소방 관련학의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자

(나)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자

(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자격을 소지한 자

(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소방설비기사 및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자

(마)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소방설비산업기사 및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자

(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자

(사)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자

(아)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소지한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

(자) 간호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소지한 소방공무원(응급처치 교육에 한한다)

(2) 외래 초빙강사 : 강사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일 것

2. 교육시설 및 교육용기자재

가. 사무실 :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강의실 :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의자·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추어 것

다. 실습실·체험실 :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라. 교육용기자재

기자재명	규격	수량(단위: 개)
빔 프로젝터 (beam projector) (스크린 포함)		1
소화기 (단면절개: 斷面切開)	3종	각 1
경보설비시스템		1
간이스프링클러 계통도		1
자동화재탐지설비 세트		1
소화설비 계통도 세트		1
소화기 시뮬레이터 세트		1
응급교육기자재 세트		1
심폐소생술(CPR) 실습용 마네킹		1